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au calme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91060]

<http://www.leekaja.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9.10.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 . .]

오 캄 (au calme)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뷰티끄레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뷰티끄레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3(논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518-832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512-8852]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 02-518-832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뷰티크레아	오캄(au calme) 외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3(논현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11.14	2012.01.02	최유빈	02-518-8322	02-512-8852
	법인등록번호	110111-4728650	사업자등록번호	211-88-71272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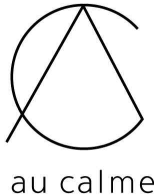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대표자)	최 유 빈	오캄(au calme) 외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3(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 유 빈	02-518-8322	02-512-5582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이 소 영	오캄(au calme) 외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3(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 유 빈	02-518-8322	02-512-5582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감사)	이 우 찬	오캄(au calme) 외1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3(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 유 빈	02-518-8322	02-512-558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오캄(au calme)]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오캄(au calme)	
상 호	오캄(au calme) OO점	
상표(서비스표)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739,929	2,553,029	4,186,899	3,712,821	247,079	122,707
2022년	7,943,424	3,694,095	4,249,329	5,035,285	142,960	62,429
2023년	8,141,845	3,856,756	4,285,088	4,447,061	-258,796	35,759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별지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이가자헤어비스(1995.3월)와 오캄(au calme)(가맹사업시작일:2019.7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이가자헤어비스 83%, 오캄(au calme) 1%, 기타(아카데미 등) 16%로 구성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임원	최 유 빈	대표이사	2022.4~ 현재	(주)뷰티끄레아 대표이사	회사 총괄
관련임원	이 소 영	이 사	2011.11~ 현재	(주)뷰티끄레아 이사	가맹사업 담당
비관련임원	이 우 찬	감 사	2022.4~ 현재	(주)뷰티끄레아 감사	회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2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뷰티끄레아	가맹사업 경영	1995.3.~현재	이가자 헤어비스(등록번호: 20090100419)이라는 영업표지의 미용프랜차이즈 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au calme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출원 2019.08.09. 등록 2020.01.15	출원 40-2019-0124408 등록 4015647160000	주식회사 뷰티끄레아	2030.01.15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오캄(au calme)]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9년 9월 3일

2. 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뷰티끄레아	오캄(au calme)	이 우 찬	2019.9 ~ 현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3(논현동)
주식회사 뷰티끄레아	오캄(au calme)	최 유 빈	2022.4 ~ 현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6길 33(논현동)

3. 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오캄(au calme)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이미용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오캄(au calme)]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3	0	3	3	0	3	3	0
서울	2	2		2	2		2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1		1	1		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오캄(au calme)]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1	0	0	0	3
2022	3	0	0	0	0	3
2023	3	0	0	0	0	3

[오캄(au calme)]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2]를 확인 하십시오

6. [오캄(au calme)]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뷰티끄레아	이가자헤어 비스	20090100419	이미용	120/0	120/0	114/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3	1,553,327	23,897	1,943,145	35,329	1,058,759	17,076	
서울	2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해당없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1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	1,40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오캄(au calme)]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0]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106,733	106,733	-	
광고	소계		106,733	106,733	-	
판촉	소계		-	-	-	

당사는 이가자헤어비스(1995.3월)와 오캄(au calme)(가맹사업시작일:2019.7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광고비 및 판촉비는 전체 사업관련 비용으로 당 가맹사업 관련 광고비 및 판촉비는 상기 광고비 및 판촉비보다 적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납입하실 가맹금은 별도의 예치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뷰티끄레아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계약체결~최장 2개월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예치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범위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오캄(au calm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49,600~169,600]천원(※[99]㎡기준)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할인점, 백화점 등 입점 시 [160,600~180,600]천원입니다. 단, “갑”이 별도로 정한 상권에 입점 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로 본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상품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22,000]		
영업표지 사용대가	11,0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제공대가	5,5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개설 시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미제공 시 반환	개설 시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시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브랜드밸류관리대 가	5,500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대형 마트 입점시 최초가맹금은 [33,000]천원 이상입니다. 단, “갑”이 별도로 정한 상권에 입점 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로 본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용실 가맹영업을 개시 전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가맹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과 그때까지 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 등의 비용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0	계약 체결 과 동시 지급	로열티 등 가맹금 미지급, 물품대금 연체, 손해배상 등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	

※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갑”은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 한다.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아닌 계약기간 내에 중도 해지될 경우에도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 한다.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2,000]
영업표지사용권 대가	11,000
경영지도, Open교육 등 제공대가	5,500
브랜드밸류관리대가	5,500
계약이행보증금	20,000

[대형 마트 입점시 최초가맹금은 [33,000]천원 이상으로 예치 가맹금은 [53,000]천원 이상입니다. 단, “갑”이 별도로 정한 상권에 입점 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로 본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99.174평방미터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면적 3.3㎡당 금액	[107,600~127,600] (99㎡기준) [약 3,586~4,253]					
필수설비 (정착물;미용집기류)	협력업체	15,000 ~ 20,000		설치 1일 이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72,600	2.42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3.3㎡ 늘어날 때마다 [2.420]천원 추가부담
외장공사(간판 등)	협력업체	10,000 ~20,000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최초 공급 소모비용	당 사 외	10,000 ~15,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발주 전 계약해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의 인테리어, 필요설비/정착물에는 <전기승압장치, 냉난방기기, 외부환풍, 자동문, 강화유리, 소방설비, 철거, 온수시설, 간판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인테리어/설비, 외주(간판 등)은 당사가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업체선정은 권유사항입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디자인 제공 및 관리의 대가로 3.3㎡ 기준으로 [275]천원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연→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최저 실 면적 132.232㎡ 이상의 점포를 소유 및 임차
종업원	디자이너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당사가 실시하는 능력평가를 통하여 등급을 결정 받아, 스타일리스트 등급별로 당사가 실시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함	디자이너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채용으로 말미암아 그 직원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기존 또는 인 근 지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읍은 갑의 조정판정에 따라야 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오캅(au calme)]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 분할 납부 : 해당 없음 (당사는 일시불로 가맹금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납입경비 (로열티)	가맹본부	1,650/월	당월말일	해당없음 (후불제)	해당없음 (후불제)	2023년 기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 내용에 따라 사전 통지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비 납부 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시행 후 반환 안됨	교육 필요시 지급
광고 분담금 (전국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 이 배분하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광고 분담금 (지역광고)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 이 배분하여 분담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후 1년간 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광고집행 시 반환 안됨	“V.8.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자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18]%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없음		
상품공급비	가맹본부	-	인수 동시	-	-	

[당사의 정기납입경비(로열티)는 매장의 매출현황, 입지상황 등으로 고려해 상호 합의 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매출증빙, 지출 증빙 등 가맹점사업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이나 교육훈련비는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사전통지를 하고 분담금이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매장의 경우 매장의 매출액을 알 수 없어 차액가맹금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과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오캄(au calme)]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부담하는 금원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계약을 체결하며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가맹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중도해지를 포함한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중단 및 반환을 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민사상 위약금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제2항 규정 외 보유하고 있는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귀하는 공급받은 상품 중에서 하자가 없는 상품은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는 주문 당시의 공급가격을 그 대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반환여부 및 그 가격을 정합니다.
- ⑥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⑦ 계약 만료, 해지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귀하는 공급된 상품 등 중에서 정상품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상태를 감안하여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상환가격을 정합니다.
- ⑧ 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당사는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합니다.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아닌 계약기간 내에 중도 해지될 경우에도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합니다.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5%~협의 사항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당사만이 독점적 권한을 남용하여 특별히 높은 장려금을 받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가자헤어비스와 오캄(au calme)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주선의 대가내역은 전체 가맹사업관련 내역으로 당 가맹사업 관련 내역은 이보다 적습니다.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수취여부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 지 4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음	상품 공급 및 제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 없음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 지 4 참조	별 지 4 참조	홈페이지에 공지	2023. 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 업종(미용실 영업운영)	오캄(au calme) 이가자헤어비스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기존매장을 기준으로 최단도로 1km를 원칙으로 함[대형마트 및 백화점, 극장,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는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함]	협의하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오캅(au calme)]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날부터 당해 년도 12 . 31일까지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 종료 후 갱신·연장 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9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 [오캄(au calme)]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9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약정해지사유, 합의해지, 즉시해지사유로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 해지 사유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2. 귀하가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 결제 및 로열티를 2회 이상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경우	제39조
3. 귀하가 지정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제39조
4. 귀하가 임의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	제39조
5. 당사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9조
6. 귀하가 당사의 상호·상표·서비스표 등 일체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39조
7. 가맹점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9조
8.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 양도·양수를 하였을 경우	제39조
9. 고의 또는 과실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당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39조
10. 귀하가 본 가맹점과 동종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한 경우	제39조
11. 귀하가 가압류·가처분(단순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처납처분을 받은 경우	제39조
12. 귀하가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39조
13.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주관하는 오프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직원 교육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제39조
14.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당사에게 해지권이 유보되거나, 귀하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2) 합의해지

① 당사와 귀하는 각각 본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

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합의해지가 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즉시해지 사유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0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0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0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0조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6.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0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0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0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40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를 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을 경우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48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48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팀 (02-547-8322)

귀하가 운영하는 [오캄(au calme)]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부담하는 금원은 교육비, 계약 이행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계약을 체결하며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가맹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상속 절차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한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오캄(au calme)]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미용 업종(미용실 영업운영)	해당 없음	문의: 영업팀(02-518-832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오캄(au calme)]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함(계약 시 협의 조정)	주6일 이상 개점	문의: 영업팀 (02-518-83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해당 없음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강사)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가맹본부에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오캉(au calme)]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광고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총 비용의 20 %	광고비 총액의 80%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총수에 대비하여 분담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분기에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그 분기의 전 달 말일까지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납입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행사, 지역별 행사) 가맹점모집광고는 본사 전액 부담
개별 행사	가맹점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시행 및 비용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판촉활동의 횟수, 시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 총액의 80%를 가맹점사업자가 배 분하여 분담	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분기에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그 분기의 전 달 말일까지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납입	v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40%	광고비 총액의 60%를 가맹점사업자가 배 분하여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균등부담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전체 판촉 행사
개별 행사	매장개별 행사	가맹점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시행 및 비용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문 제21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1년 이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하는 표준 인테리어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 조문
제43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42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1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중 41조[합의해지]에 따라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금1,650,000원 X 잔여기간의 월수 ④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 [가맹금의 반환] ① “을”은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 규정의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때까지 “갑”이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99.174평방미터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49,600~169,6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보증금 납입	- 가맹본부 법인계좌 입금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증권 제공	D-29(1일)	42,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미용집기류 구매 등	D-24~5(20일)	107,600~127,6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 입점시 상기의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가맹점사업자 관할 소재지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다만,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관측장려금	해당없음				
관측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차후 진행시 사전협의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 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 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 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관리 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오캄(au calme)]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오캄(au calme)]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최초(오픈) 교육	3일 이상(1인기준)	5,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숙박비 등은 별도 부담)
수시(기술) 교육	3시간(1인기준)	교육 내용에 따라 사전 통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신입 종업원 필수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가맹점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개점 승인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2-518-832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leekaja.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2021, 2022, 2023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 가맹점 목록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 비품>

오픈물품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 상품>

상품 및 단가표

항 목		단 가	비 고
커 트	남자컷	20,000	
	여자컷	20,000	
	학생컷	15,000	
드라이	드라이	20,000	
	세팅드라이	25,000	
컬 러	베이직 염색	60,000	
	헤나염색	90,000	
펌	매직펌	100,000	
	세팅펌	120,000	
업스타일		60,000	

※ 상기 단가는 지역 및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본품목만 명시)

지정 미용 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오캄(au calme)]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오캄(au calme)]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가맹희망자)에게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예시 : 상기 정보를 제공받았음)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장소			

가맹본부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인 : _____ (인) 또는 서명